

아주대학교 2026학년도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 계약(가입)조건

I. 계약일반

1. 적용법률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2. 계약기간 : 2026.05.24. 00시 ~ 2027.05.23. 24시
3. 가입대상 : 아주대학교 연구활동종사자 8,711명 (2026.04.01. 현재)

[단위:명]

구분	대학생	대학원생 (연구등록 수료생 포함)	무급연구원	계
1급	1,843	272	-	2,115
2급	4,731	1,239	5	5,975
3급	616	5	-	621
합계	7,190	1,516	5	8,711

- 적용 대상자에 대한 보험 가입제한(인수거부) 없음
4. 효력 발생일 : 2026.05.24. 00시부터 효력 발생
 5. 보험료 적용 : 1급(저위험), 2급(중위험), 3급(고위험)별 보험료 적용
 6. 보험료 납부 : 계약서 체결 후 30일 이내 지급
 7. 보장 범위 : 과실이 있고 없음을 가리지 않고 자기 또는 다른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연구활동중에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365일 24시간 보장
 8. 무심사 원칙
 - 계약체결 당시 재학 중인 연구활동종사자 전원 무심사
 - 대학생, 대학원생은 등급별 인원수만으로 보험료 산출 및 가입
 9. 가입 변경자 계약사항
 - 가. 보험가입 인원수는 변동될 수 있으며, 대학생·대학원생·연구원·연구보조원 각각 인원의 10% 이하 증감이 있을 시에는 보험료를 정산하지 아니하며, 10%를 초과 한 경우 초과분에 한하여 정산(정산일은 당해 학년도 마지막 달에 실시)
 - 나. 연구원·연구보조원 중 신규채용 된 인원의 경우, 기존 인원과 변경 또

는 신규채용된 내용을 총장 공문으로 증명할 경우 보상이 가능하여야 함
다. 무급연구원 및 연구보조원 인원 변동 시 통보 : 필요 시
라. 보험효력 발생일: 인사발령(변동사유 발생)일자

II. 보험계약조건

1. 보상내역

가. 보상기준 : 연구실(실험실)에서 발생한 사고로 부상·질병·신체장애·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발생 시 보상

나. 보상금액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고시 기준 이상

- 1) 유족급여 및 장해급여 : 2억원
- 2) 요양급여 : 20억원을 한도로 실제발생한 의료비 보상
- 3) 장의비 : 1천만원
- 4) 입원급여 : 1일당 5만원
- 5) [특약]중대한 화상치료 간접지원금 : 1천만원(대학생 및 대학원생만 지급)

가) 유족급여

- 연구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그 사고가 원인이 되어 질병에 걸려 사망 시 보상
- 타기관(대학, 연구기관 등)에서 연구활동 중 발생한 사고 포함
- 실종의 선고를 받은 경우 포함
- 지급제한 사항 이외 모두 보장
 - 지급제한 :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고의로 발생된 사고
 - 지진,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 전쟁,혁명,내란,폭동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나) 장해급여

-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실사고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보상
- 후유장해등급별 가입금액 보상(붙임1 참조)
- 지급제한 사항 이외 모두 보장
 - 지급제한 :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고의로 발생된 사고
 - 지진,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 전쟁, 혁명, 내란, 폭동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다) 요양급여(상해)

- 실험 중 사고로 인하여 부상·질병 등을 당한 경우에 실제 발생한 의료비에서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요양급여로 지급
- 의료비의 범위
 - 진찰 및 검사
 - 약제 또는 진료재료의 지급
 -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 재활치료
 - 입원
 - 간호 및 간병
 - 호송
 - 의지·의치, 안경·보청기 등 보장구의 처방 및 구입
- 항목별 지급기준
 - 진찰, 검사, 처치, 수술, 응급 및 재활치료 등은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지급.
 - 한방치료는 침과 뜸 등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비용만 지급.
 - 약제비는 처방전에 의한 경우에만 지급.
 - 입원료는 대중적인 일반병실의 입원료를 지급. 다만, 전신 화상자, 세균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격리가 필요한 환자, 심한 정신질환자 등 의사의 소견에 따라 부득이 상급병실(입원실에 5인 이하가 입원할 수 있는 병실을 말한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
 - 의지·의치·안경·보청기 등 보장구는 처방 및 구입의 경우에 드는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 51조 제2항을 준용하여 지급
 - 치아 보철비는 도재전장관(사기 재료로 이 빛깔이 나도록 만든 인공 치아)에 드는 비용을 지급. 다만, 기존의 치아 보철물이 외상으로 손상되거나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지급.
-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한약재 등의 보신용 투약비용

라) 입원급여

- 실험 중 사고로 인한 부상·질병 등의 손해의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에 입원을 한 경우에 입원 1일당 5만원 이상을 정액 보상. 다만, 입원급여의 지급기간을 설정할 때에는 ‘4일 이상 30일 이내’를 최소로 함.
- 입원급여는 요양급여와 별개로 지급.

마) 장의비

- 실험 중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
- 장의비는 유족급여와 별개로 지급.

바) 중대한 화상치료 간접지원금

- 실험 중 사고로 인한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중증화상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붙임2 참조)
- 실험 중 사고로 인한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중등도화상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의 40% 지급(붙임3 참조)

Ⅲ. 보험관련 기타사항

1. 보험가입에 필요한 개인정보가 타 용도로 사용 되었을 시 공급사(보험사)에게 민·형사상 책임이 있음(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준수 및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 체결 필요)
2. 보험사는 보상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자료를 본교에 제출해야 하며, 보험료 지급에 관련한 본교 구성원 문의사항에 응대할 상담인력을 지정해야 함
3. 낙찰자는 계약 시 보험기간 1년 기준으로 작성한, 상해 사망보장, 질병/상해 등급별 장해보장, 입원의료실비보장, 상해의료실비보장 등 보험가입 종목별로 낙찰율을 적용한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4. 계약체결에 앞서, 1.계약일반 2.가입대상 내 인원 등에 변동 발생 시, 해당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계약체결 예정임

IV. 입찰참가 자격조건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는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3. 보험업법 및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공제포함)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본사
 -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
 -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받은 경영개선통과안을 입찰참가 접수일까지 제출하여야만 입찰참가가능
4. 2025년 9월말 기준 지급여력비율 100% 이상인 업체
5.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내 대학(교)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은 실적을 1건 이상 보유한 업체(증빙 제출)
 - 보험 가입금액 : 20,000천원 이상
 - 보험 가입기간 : 1년 이상

※ 본 계약 건은 공동도급방식 계약 불가함. 끝.

[붙임1] 후유장애등급별 보상금액

등 급	보상금액	후 유 장 해
1급	20,000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장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5. 반신마비가 된 사람 6.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7.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8.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9.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2급	18,000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이하로 된 사람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6.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3급	16,000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4급	14,000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6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고막의 전부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등 급	보상금액	후 유 장 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4.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두 발을 족근중족관절(리스프랑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급	12,0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이하로 된 사람 2. 한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한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한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7.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8.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6급	10,0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1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고막의 대부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모두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4.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애나 고도의 기능장애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애가 남은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중의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의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8. 한 손의 5개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급	8,0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사람 2.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

등 급	보상금액	후 유 장 해
		<p>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p> <p>3.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p> <p>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손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p> <p>5.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p> <p>6.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p> <p>7.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p> <p>8. 한 발을 족근중족관절(리스프랑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p> <p>9.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애가 남은 사람</p> <p>10.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애가 남은 사람</p> <p>11.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p> <p>12. 외모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p> <p>13. 생식기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p> <p>14.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애나 고도의 기능장애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애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애나 극도의 변형장애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애가 남은 사람</p>
8급	6,000만원	<p>1. 한 눈이 실명되거나 한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사람</p> <p>2.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애가 남은 사람,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신경근 장애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애나 극도의 변형장애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애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애나 중등도의 변형장애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애가 남은 사람</p>

등 급	보상금액	후 유 장 해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5. 한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9.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0.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9급	4,500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6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사람 3. 두 눈에 모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4.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5. 코가 결손 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6.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큰 말소리 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8. 한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 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 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9.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10.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 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 가락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 은 사람 13.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4. 생식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등 급	보상금액	후 유 장 해
		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6.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7.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애나 극도의 변형장애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애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애나 중등도의 변형장애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애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애가 남은 사람 18. 외모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0급	3,750만원	1. 한 눈의 시력이 0.1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3. 코에 중증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4.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5. 14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 6. 한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8.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9.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한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11.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2. 한 팔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3. 한 다리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등 급	보상금액	후 유 장 해
		14.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남은 사람,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애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애나 중등도의 변형장애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애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 장애가 남은 사람
11급	3,000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두 눈이 모두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거나 또는 뚜렷한 운동기능장애가 남은 사람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장애가 남은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가 결손 된 사람 4. 한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6. 두 귀의 귓바퀴에 고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7.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남은 사람,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애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애나 중등도의 변형장애가 남고 동시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애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애가 남은 사람 8. 한 손의 가운데 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9.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1.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음 사람 12. 10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 13. 외모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4. 두 팔의 노출된 면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5.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2급	2,500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 눈의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거나 뚜렷한 운동기능장애가 남은 사람 2.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장애가 남은 사람 3. 한 눈의 눈꺼풀의 일부가 결손 된 사람

등 급	보상금액	후 유 장 해
		4. 7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 5. 한 귀의 귓바퀴에 고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또는 두 귀의 귓바퀴에 중등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6. 코에 경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7. 코로 숨쉬기가 곤란하게 된 사람 또는 냄새를 맡지 못하게 된 사람 8. 쇄골·흉골·늑골·견갑골 또는 골반골에 뚜렷한 변형이 남은 사람 9. 한 팔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10. 한 다리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11. 장관골에 변형이 남은 사람 12.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3. 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4.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5.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6.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애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애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애가 남은 사람 17. 두 팔의 노출된 면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8.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3급	2,000만원	1. 한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에 반맹증 또는 시야협착이 남은 사람 3. 한 귀의 귓바퀴에 중등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또는 두 귀의 귓바퀴에 경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4. 5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 5.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등 급	보상금액	후 유 장 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6. 한 손의 엄지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 손의 둘째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끝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 9. 한 다리가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10.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 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중의 수상 부위에 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 13. 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4. 두 팔의 노출된 면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5.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4급	1,25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2. 한 귀의 컷바퀴에 경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3. 3개 이상의 치아에 치아보철을 한 사람 4. 두 팔의 노출된 면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5.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6.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손가락 끝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 9.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1. 척주에 경미한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추의 수상 부위에 비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

등 급	보상금액	후 유 장 해
<p>비 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표에 의하며, 굴절이상인 사람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2. 손가락을 잃은 것이란 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기타의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관절이상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3.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손가락의 밑단의 2분의 1이상을 잃거나 중수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4. 발가락을 잃은 것이란 발가락의 전부를 잃은 경우를 말한다. 5.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엄지발가락에 있어서는 말절의 2분의 1이상, 기타의 발가락에 있어서는 끝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 또는 중족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발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6. 흉터가 남은 것이란 성형수술을 하였어도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흔적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7.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 등을 타인에게 의존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8.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 등은 가능하나 그 외의 일을 타인에게 의존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9. 항상간병 또는 수시간병의 기간은 의사가 판정하는 노동능력상실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한다. 10.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3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고, 뚜렷한 장애가 남은 것이란 정상 기능의 2분의1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며, 장애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1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 11.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이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12.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것’이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로 종사할 수 있는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등 급	보상금액	후 유 장 해
<p>가.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지만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결손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나. 전간(癲癇) 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 타각적(他覺的) 소견으로 증명되는 사람</p> <p>다. 사지에 경도(經渡)의 단마비(單痲痺)가 인정되는 사람</p> <p>13.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은 경우를 말한다.</p> <p>1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중등도의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정도만 남은 경우를 말한다.</p> <p>1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것’이란 중등도의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p> <p>16. 장애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장애등급을 그 연구활동종사자의 장애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애등급을 그 연구활동종사자의 장애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연구활동종사자의 장애등급으로 하고, 그 장애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애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연구활동종사자의 장애등급으로 한다.</p> <p>가.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상향 조정 나.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 다.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p> <p>17. 상기 규정되지 아니한 장애가 있을 때에는 같은 표 중 그 장애와 비슷한 장애에 해당하는 장애등급으로 결정한다.</p>		

[붙임2] 중증화상 분류표

상병명(상병코드)		
구분	중증도 기준	채표면적 기준
1	가. 머리 및 목의 3도 화상(T20.3) 나. 몸통의 3도 화상(T21.3) 다.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와 팔의 3도 화상(T22.3) 라. 손목 및 손의 3도 화상(T23.3) 마. 발목 및 발을 제외한 엉덩이 및 다리의 3도 화상(T24.3) 바. 발목 및 발의 3도 화상(T25.3) 사. 상세불명 신체부위의 3도 화상(T30.3)	가. 신체표면의 10-19%를 침범한 화상(T31.1) 나. 신체표면의 20-29%를 침범한 화상(T31.2) 다. 신체표면의 30-39%를 침범한 화상(T31.3) 라. 신체표면의 40-49%를 침범한 화상(T31.4) 마. 신체표면의 50-59%를 침범한 화상(T31.5) 바. 신체표면의 60-69%를 침범한 화상(T31.6) 사. 신체표면의 70-79%를 침범한 화상(T31.7) 아. 신체표면의 80-89%를 침범한 화상(T31.8) 자. 신체표면의 90%이상을 침범한 화상(T31.9)
2	가. 머리 및 목의 3도 화상(T20.3) 중 안면부에 수상한 경우 나. 몸통의 3도 화상(T21.3) 중 성기 또는 회음부에 수상한 경우 다. 손목 및 손의 3도 화상(T23.3) 라. 발목 및 발의 3도 화상(T25.3) 마. 눈 및 부속기의 화상(T26.0~T26.4)	
3	가. 호흡기도의 화상(T27.0~T27.3) 나. 기타 내부기관의 화상(T28.0~T28.3)	

[붙임3] 중증도화상 분류표

상병명(상병코드)		
구분	중증도 기준	채표면적 기준
1	가. 머리 및 목의 2도 화상(T20.2) 나. 몸통의 2도 화상(T21.2) 다.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와 팔의 2도 화상(T22.2) 라. 손목 및 손의 2도 화상(T23.2) 마. 발목 및 발을 제외한 엉덩이 및 다리의 2도 화상(T24.2) 바. 발목 및 발의 2도 화상(T25.2) 사. 상세불명 신체부위의 2도 화상(T30.2)	가. 신체표면의 20-29%를 침범한 화상(T31.2) 나. 신체표면의 30-39%를 침범한 화상(T31.3) 다. 신체표면의 40-49%를 침범한 화상(T31.4) 라. 신체표면의 50-59%를 침범한 화상(T31.5) 마. 신체표면의 60-69%를 침범한 화상(T31.6) 바. 신체표면의 70-79%를 침범한 화상(T31.7) 사. 신체표면의 80-89%를 침범한 화상(T31.8) 아. 신체표면의 90%이상을 침범한 화상(T31.9)